

「교육과정운영위원회 규정」 신구조문대비표

2021. 4. 15. 개정 판 (시행 2021. 3. 1.) → 2022. 3. 7. 개정 판 (시행 2022. 3. 7.)

바뀜 2 · 신설 0 · 삭제 0 · 번호 변경 0

공식 원본 law.syu.ac.kr · <https://suleap.syu.my/r/83/compare?from=1185&to=1310> · 내려받은 때 2026. 10. 21. 오전 11:27:17 · 밑줄은 바뀐 부분

현 행	개 정 안
제2조(구성) 위원회는 교무처장(위원장), 교무부처장(서기), <u>교목처장, 기획처장, 국제교육원장, 스미스학부대학장, 학사지원팀장, 교수(6인), 위촉직 위원 (3인: 학생대표, 산업계 대표, 지역사회 인사)</u> 로 구성한다. <개정 2013-04-29><개정 2016-02-29><개정 2017-10-01><개정 2021-02-15>	제2조(구성) 위원회는 교무처장(위원장), 교무부처장(서기), 기획처장, 스미스학부대학장, 학사지원팀장, 교수(6)로 구성한다. <개정 2013-04-29>
제5조(기능) 위원회는 다음 각 호를 심의한다. 1. <u>교육제도 수립 및 교육과정 개선에 관한 사항</u> 2. <u>교양교육과정, 전공교육과정 편성과 개정</u> 에 관한 사항 3. <u>기타 총장 또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u> 4. <u>각 학과의 교육과정의 운영 및 기타 요구사항을 연구, 기획, 평가</u> <개정 2016-02-29>	제5조(기능) 위원회는 다음 각 호를 심의한다. <개정 2022-03-07> 1. <u>교양 및 전공 전반에 대한 교육과정의 운영 및 기타 요구사항을 연구</u> ~~및~~ <u>기획</u> ~~및~~ <u>평가</u> 에 관한 사항 2. 교육과정 개편 계획 수립에 관한 사항 3. 교육과정 운영에 관한 <u>중요</u> 사항 4. 기타 위와 관련한 제반사항

개정문 (참고본)

원본(law.syu.ac.kr)에 개정문이 없어, 직전 판과의 신구조문대비표로 다시 만든 참고본입니다. 공식 문서는 공포 원문을 따릅니다.

「교육과정운영위원회 규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2조(구성) 위원회는 교무처장(위원장), 교무부처장(서기), 기획처장, 스미스학부대학장, 학사지원팀장, 교수(6)로 구성한다.

제5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5조(기능) 위원회는 다음 각 호를 심의한다.

1. 교양 및 전공 전반에 대한 교육과정의 운영 및 기타 요구사항을 연구 ~~및~~ 기획 ~~및~~ 평가에 관한 사항
2. 교육과정 개편 계획 수립에 관한 사항
3. 교육과정 운영에 관한 중요 사항
4. 기타 위와 관련한 제반사항

부 칙

이 규정은 2022년 3월 7일부터 시행한다.